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13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	3
2. 아이돌봄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	15
[참고자료 1]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8
[참고자료 2] 관계기관 의견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9.
3. 회 부 일 :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자들은 장시간 대기한 후에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편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시간이 2024년 기준으로 32.8일에 달함. 특히 야간 시간대의 경우 아이돌봄사를 구하기 어려워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될 경우 자칫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하는 소극적 행정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시설이 없을 경우 야간·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의6,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0조).

Ⅲ. 검토의견

1.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수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센터)를 관할 지역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 아이돌봄사 배치,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시 거부 금지 등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및 제11조의6 신설,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u>“24시간 아이돌봄센터”란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서비스</u>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 ④ (생략)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 ⑤ (생략)

<신설>

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센터로서 제11조의6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 ④ (생략)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 ⑤ (생략)

제11조의6(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관할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u>관할 지역에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②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시설·인력·운영 등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u>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 ③ (생략)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 ③ (생략)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 ⑦ (생략)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 ⑦ (생략)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생략)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생략)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생략)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생략)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관리·평가) ① ~ ④ (생략)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u> 관리·평가) ① ~ ④ (생략)
제18조의2(<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만족도 조사) ①·② (생략)	제18조의2(<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등 만족도 조사) ①·② (생략)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⑧ (생략)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⑧ (생략)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u>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제26조(비용의 보조) ----- ----- ----- ----- <u>광역지원센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u> ----- -----.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u>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자</u> ,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 <u>광역지원센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 및 명령) (생략)	제28조(지도 및 명령) (생략)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① ~ ③ (생략)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① ~ ③ (생략)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 ② (생략)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 ② (생략)
제30조(비밀누설금지) (생략)	제30조(비밀누설금지) (생략)

현행법¹⁾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5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232개의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또한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경우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²⁾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2025. 4.22.)되어 2026. 4.23.부터 시행될 예정임³⁾.

-
-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 3)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20932호)
-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0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자료 :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88.7%로, 신청가구 중 9,101가구가 아이돌보미를 연계받지 못했으며, 연계받은 가구도 평균 대기일이 32.8일에 달하고 있음. 이는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시행일: 2026. 4. 23.]

< 2023년·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

(단위: 가구, 명)

구 분	신청가구	연계가구	미연계가구	연계율	아이돌보미
2023년	77,841	68,405	9,436	87.9%	28,071
2024년	80,277	71,176	9,101	88.7%	29,635

주: 정기서비스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현황 >

(단위: 가구, 일)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기가구 수	2,606	6,809	14,745	13,031	9,519
평균 대기일	8.3	19.0	27.8	33.0	32.8

주: 1. 대기가구는 연도말 대기가구 상태에 있는 가구수를 의미

2. 평균 대기일수는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된 가구의 평균 대기일수를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에 실시한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⁴⁾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성인 보호자 없이 홀로 있거나 미성년 형제·자매끼리 있는 돌봄공백은 16~19시(30.1%)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시 이후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⁵⁾. 응답자의 64.4%(16,214명)는 야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4) 조사는 2028. 7. 21. ~ 31. 초등학교를 위한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부모 25,1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참고자료 1].

5) 돌봄공백 시간대는 오후 4~7시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8~10시(5.9%), 오후 10시~자정(1.5%), 자정~오전 7시(0.8%) 등 순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심야시간에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야간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적 돌봄망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여건에서 야간 시간대 돌봄인력 부족과 공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반복적 돌봄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적정 수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관할 지역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간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및 2026. 4.23. 시행예정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연계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적 제약이 없어 야간 및 휴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는 비용 지원을 하고 있음⁶⁾.

6)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20932호)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25. 4. 22.> [시행일: 2026. 4. 23.]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거나 아이돌보미를 충분하게 운영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며,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낮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아이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맞게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야간 시간대 등의 연계 확대를 통해 아이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앞에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공백은 16~19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20시 이후부터는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20시 이후의 야간 돌봄공백은 일상적이기보다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임.

참고로,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9월부터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아

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5천 원/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2026년부터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아이돌봄 야간긴급돌봄 서비스 >

구분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야간이용할증료 지원	야간긴급돌봄수당
세부사업	아이돌봄지원	
사업목적	야간 시간대(22시~익일 06시) 돌봄 지원 강화	
지원대상	야간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가형_중위소득 75%이하)	야간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가구 유형 무관)
지원취지	이용자 할증료 지원으로 이용 부담 경감	아이돌보미 인센티브 지급으로 야간긴급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지원내용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구의 본인부담금 중 야간할증요금(기본 금액의 50%) 지원	야간시간대(22시~익일 06시) 활동한 아이돌보미 대상 야간긴급돌봄수당 (5천원/일) 지급
편성예산	460백만원	2,163백만원

자료 : 성평등가족부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여, 야간(평일 22시, 주말 17시)까지 돌봄 공간을 제공하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야간 운영]

구분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야간 운영사업 (지방활성화 사업)
운영규모	435개소	20개소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예산지원	59백만원	59백만원 + 120백만원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의무사항 아님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 17:00 *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운영인력	전담인력 1인, 보조인력 1인	전담인력 3인, 보조인력 1인
프로그램	돌봄품앗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지원

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중 350개소⁷⁾를 야간까지 연장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야간 돌봄수요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신설하기 보다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야간 시간대 매칭 확대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함께 취약시간대 매칭을 강화하기 위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25. 9 ~)이므로, 정책의 추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22시까지 운영 300개소, 24시까지 운영 50개소(24까지는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별 2~4개 이상 운영하도록 함)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⁸⁾.

8) [참고자료 2] 관계기관 의견

2. 아이돌봄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생략) <신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법⁹⁾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가 있음.

한편,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2025. 4.22.)되어 2026. 4.23. 시행예정임¹⁰⁾.

9)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20932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낮은 이유도 있다는 점에서 아이돌봄사 등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아이돌봄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에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돌봄인력의 처우개선과 관련 유사 입법례¹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장의 책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아이돌봄사 등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 및 안정적 일자리 환경 조성 효과가 있을 것이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문언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1】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마을돌봄 연장돌봄 이용 수요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025. 7.21(월) ~ 7.31(목) / ▶ (설문 참여인원) 보호자 25,182명	
▶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보호자(아동 약 14.5만명)	
▶ (참여방법) 온라인(URL/QR) 설문조사, 아동 보호자에게 문자 발송	
▶ (주요 조사내용) 야간·심야 돌봄수요(~24시/24시 이후, 긴급·상시 수요 등)	

1. 돌봄공백* 시간대 (복수선택 가능)

*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홀로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들만 지내는 시간

시간	16 ~ 19시	20 ~ 22시	22 ~ 24시	24 ~ 07시
응답 수(건)	7,589 (30.1%) (시간대 평균)	1,489 (5.9%)	383건 (1.5%)	217건 (0.8%)

※ 학기 중 & 주중 상황 가정 질의, 센터 표준 이용시간(13~20시)은 항목에서 제외

2. 22시 이후 긴급 돌봄공백 상황 시 주 대처 방안

방안	친척이웃 부탁	별도 대안 없음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응답자(명)	15,772 (62.6%)	6,328 (25.1%)	790 (3.1%)	1,450 (5.8%)

* 지자체 자체 거점 긴급돌봄 시설 426명(1.7%), 24시간 운영시설 416명(1.7%)

3. 긴급상황 대비 야간 공적돌봄 필요성

방안	필요하다	보통	필요없다
응답자(명)	16,214 (64.4%)	4,835 (19.2%)	4,133 (16.4%)

4. 선호하는 야간 연장돌봄 방식 (복수선택 가능)

구분	순위	건수	비율
돌봄센터 2시간 연장(~22시)	1	10,500	41.7
돌봄센터 4시간 연장(~24시)	6	3,721	14.8
돌봄센터 심야 연장(24시~)	7	2,176	8.6
긴급돌봄 거점시설	4	4,607	18.3
24시간 운영시설	5	4,332	17.2
가정방문 돌봄(아이돌봄서비스)	2	7,055	28.0
친척, 이웃 등 커뮤니티와 협력 돌봄	3	6,080	24.1
기타	8	688	2.7

5. 돌봄센터 이용시간(13~20시) 추가 이용 의향 시간대 (복수선택 가능)

※ 464명만 응답으로 표본자체 적음, 1.8% 불과(전체 응답자 25,182명)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392건)	
	주중 (242건)		주말 (144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 ~ 20	156	64.5	52	36.1	154	39.3
20 ~ 21	95	39.3	32	22.2	86	21.9
21 ~ 22	48	19.8	16	11.1	42	10.7
22 ~ 23	13	5.4	13	9.0	14	3.6
23 ~ 24	7	2.9	7	4.9	8	2.0
24 ~ 03	4	1.7	4	2.8	5	1.3
03 ~ 06	3	1.2	3	2.1	4	1.0
07 ~ 09	66	13.6	26	18.3	97	3.6

6. 22시 이후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지불 의향 있는 금액

방안	~5천원	5천원~1만원	1~2만원	2~3만원	3만원 ~
응답자(명)	5,308 (21.1%)	8,053 (32.0%)	6,865 (27.3%)	3,178 (12.6%)	1,778 (7.1%)

7. 22시 이후 돌봄서비스 이용한다 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 (복수선택 가능)

구분	생활습관	귀가 문제	정서발달	이용료 부담	시설안전	그 외 항목
응답 수(건)	13,976 (55.5%)	13,874 (55.1%)	11,568 (45.9%)	8,979 (35.7%)	7,247 (28.8%)	3,980 (15.8%)

【참고자료 2】 관계기관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25.8.13)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법」등 법령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 행정기구 설치 및 인력 운영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 하에 추진 필요
광주광역시 (25.8.18)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야간 서비스 운영 등을 하고 있어, 기존 기관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인력 증원 등) - 야간 서비스 이용 등은 50%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 이용 수요가 저조하므로 오히려 야간 서비스 이용 시 정부 보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경기도 광주시 (25.8.19)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스템상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심야 시간대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심야 활동에 대한 수당 수준이 아이돌보미에게 유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시간대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원인임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아이돌봄 시스템의 연계 방식과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신규 센터의 설치 및 운영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우선적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됨
경기도 군포시 (25.8.19)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야간·심야 시간대 수요가 크지 않은 데 비해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부수적인 예산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음
경기도 부천시 (25.8.19)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인력부족과 업무 과중이 장기 근무 부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센터 운영 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야간 돌봄의 경우 아이돌봄사 및 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등 규제와 충돌 가능성이 있음 24시간 센터 운영시 추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단독센터가 아닌 경우 타 기관의 인건비, 교대 인원 충원 등 타 기관의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기도 양주시 (‘25.8.19)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수정수용] •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4시간 운영 중인 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 사업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경기도 연천군 (‘25.8.19)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현재 운영 중인 아이돌보미 인력으로 장시간 대기 사례 없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자의 사전 신청을 통해 대부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긴급 시에는 일시연계서비스(AI연계 포함)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돌봄 수요, 인력, 운영체계 등에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며,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항은 향후 돌봄 수요 및 이용 증가 시,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경기도 용인시 (‘25.8.19)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실제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게 운영 여부에 관한 자율성 부여 필요 -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및 야간운영인력 확보 어려움 예상
경기도 화성시 (‘25.8.19)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시간 외에 야간, 주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연계서비스(단기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 AI 매칭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연계절차가 생략되어 언제든지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음
충청북도 괴산군 (‘25.8.20)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수정수용] • 지역별 실정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적 내용으로 변경할 필요
충청북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25.8.20)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 한계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기능상 서비스를 24시간 사용 가능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지정 운영 시 주 40시간 근로 체계로 되어 있는 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근로 체계를 3교대 등 교대 근무형태로 개편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센터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 운영비(임대료, 공공요금, 자산취득) 사용이 불가하므로 24시간 운영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경상북도 문경시 (‘25.8.20)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수요대비 과잉 시설 우려 - 농어촌지역의 경우 아동 인구가 적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할 가능성 - 문경시의 경우 현재 비슷한 유형의 K보듬 24시 어린이집과 야간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용 아동이 많지 않음 • 예산 부담 과다 -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재정낭비 우려 • 대체 서비스로도 목적 달성 가능 - ‘24시간 의무 설치’ 대신, 긴급·야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약제 등의 유연한 방식이 더 효율적이며 고정식 24시간 시설보다는 기존의 돌봄시설(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활용한 탄력적 서비스가 더 경제적임 ⇒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나 지역별 아동 인구 편차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의무 설치’는 효율성이 낮고 재정부담이 크다고 여겨지며 의무화보다는 재량에 따른 설치가 필요
경상북도 경산시 (‘25.8.20)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시설 및 인프라 부족 -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시설과 인력만으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어려움 -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기피 현상(운영 및 인력 관리 어려움)도 존재 • 야간 돌봄 시 문제점 - 아이돌보미가 아동과 함께 자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필요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규정이 있음,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에도 휴게시간 부여로 인한 여러 문제점 발생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휴게시간 적용 제외 업종으로 지정할 필요 - 야간(22시 ~ 익일 6시) 돌봄 시, 보호자 부재로 인해 휴게시간 부여가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어려우며,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돌보미 교체가 필요하지만 야간에 여러 명의 돌보미를 한 가정에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서울특별시, 서울시 광역지원센터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현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시설의 법적 성격, 시설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 세부지침 필요 - 기존시설(24시간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활용하는 기관 내 돌봄 검토 필요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내 야간·심야 돌봄 활성화 필요 - 이용자 이용요금 지원 및 아이돌보미 추가 수당 지급 등 - AI연계 시스템 개선 : 연계 전 이용자의 정보 파악 필요 → 무분별한 취소 사례 감소 - 아이돌보미 심야근무시 건강 및 안전확보에 대한 대책 필요
서울시 종로구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긴 하나 이용자의 수요가 낮고, 돌보미의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노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야간에 돌보미를 배치하는 것은 출근 방법(대중교통 미운행), 건강상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수요는 등·하원 시간대이며,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와 서비스 대기일수 단축은 상관관계가 적음 • 야간에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하는 법 제·개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낮 시간에는 교육기관 등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밤에 집에서 취침하는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우선되어야 함
서울시 종로구 가족센터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 - 모든 자치구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임 - 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시설 확보, 인력 채용,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 형식적 설치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 24시간 운영의 실효성 부족 - 현재 모든 센터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이용자의 신청률이 낮음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 야간·간급 시간대에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법안 발의에 언급 된 평균 대기일이 32.8일에 이른다는 것은 역(逆)으로 취약시간에는 사실상 인력 배치가 불가능함을 반영한 현실 반영임 - 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돌봄 인력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센터는 있으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유령 센터’가 다수양산될 수 있음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 모든 자치구에 의무 설치를 강제한다는 것은 지역별 인구, 수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책임 - 이는 자원의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효과 미흡할 가능성이 큼 ⇒ 본 개정안은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 나,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24시간 매칭서비스는 진행되고 있는 바 지자체 현실적 여건과 돌봄인력의 확보 가능성,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 · 따라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방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국가의 재정적 책임과 돌봄 인력 지원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서울시 용산구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서비스 이용자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22년 하반기부터는 ‘일시연계 서비스’ 도입으로 센터를 통해서만 요청되어지는 서비스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이용자-돌보미 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의안원문의 의견은 전문 아이돌봄사의 인력 부족이 원인이며, 이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지원자는 부족하나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 발생한 현상으로 현장에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 아이돌봄사와 서비스제공기관의 수행인력의 처우개선 등 주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사료됨
서울시 성동구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현행 제도 활용 가능 영역 -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주·야간 제공 가능하며, 긴급돌봄 서비스, 일시 연계 서비스 등 활용 가능함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4시간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자원을 활용·강화하는 것이 적절 • 현장의 실무적 의견(인력 수급의 어려움) - 현재도 평일·주간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24시간 확대 시 인력 수급이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 - 기존 인력도 야간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활동 유인책 마련이 필요
서울시 서대문구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기존 아이돌봄 센터를 활용하여 야간시간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부 지원 우선순위 가점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
서울시 강서구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현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내에서도 일시연계 서비스 신청을 통해 야간·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관내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 어린이집 및 24시간 어린이집이 이미 존재
서울시 구로구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권역별 기존 돌봄 거점시설(24시간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을 활용한 탄력적 운영 방식을 통해 24시간 시설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신규 부지 확보와 인력 충원, 시설 유지·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재정·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미 24시간 파견이 가능 - 전용 시설 신설 없이도 이용자 맞춤형 24시간 돌봄 제공 가능
서울시 관악구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별 야간 수요, 인력 현황, 예산 여건을 면밀히 분석 후 시범사업으로 검증 필요 •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등 유사 서울시 보육서비스 운영 중 - 24시간 방문형 서비스를 각 자치구에 의무화하면 기존 인프라와 중복 운영되어 재정적, 행정적 낭비 발생 - 기존 일시연계서비스(주말, 야간 이용 가능)와 중복되며, 현행 제도 활성화가 더 효과적 • 모든 아이돌보미가 여성이고, 95% 이상이 50대 이상의 고령자이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므로 야간 시간대의 가정 방문 돌봄은 건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 및 범죄 사고에 노출 우려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강화로 인해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시 관리 감독 및 위험요인 관리 등 부가적인 법적 의무가 대폭 증가하며, 지자체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책임 부담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임 • 전국 단위의 아이돌봄중앙센터와 권역별 광역돌봄센터를 기반으로 기존 거점형 시설 보육 서비스와 연계, 협력하여 운영함이 적합
서울시 강동구 (25.8.26)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신중검토] •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야간·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서비스는 대기일수와는 무관하며,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때 신청하여 아이돌보미와 매칭되면 즉시 야간·주말 등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현행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제도적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24시간 돌봄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 필요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만으로 아이돌봄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오히려 24시간 센터 운영에 의한 야간 상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근무강도가 높아져 근무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현행 일시연계 돌봄서비스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돌봄서비스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현행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상주시설에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돌봄 제도와는 운영구조가 상이함 - 별도의 시설형 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이용자가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시설형 돌봄 사업에 24시간 센터를 추가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내에 365열린어린이집이 존재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